

 신안산대학교	퇴직급여 지급 규정	규정번호 2-2-3 제정일자 2020.12.15 개정일자 책임부서/팀·계 사무처
---	-------------------	--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.)에 재직하는 자중에서 사립학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, 1년이상 계약하고 근속한 직원과 전업강사에 적용한다.(다만, 전업강사는 방학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본다.)

※ 전업강사: 다른직장(개인사업자 제외) 없이 강사만 직업으로 하는 자는 전업으로 분류한다.

제3조(용어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가입자: 제2조(적용범위)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과 전업강사
2. 사용자: 본 대학의 장

제4조(퇴직급여제도) ① 본 대학의 퇴직급여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퇴직금제도
 2.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제도
 3.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제도
- ②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제도를 선택한다.(단, 제도 시행일 이후 채용된 가입자는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로 한다.)
- ③ 가입자 정원의 70%이상 동의하에 제도를 변경할 수 있다.(단, DC형에서 DB형으로는 전환 불가능)

제5조(자격 취득) 근로계약서의 임용일 기준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자격 상실)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1. 사망한 때
2. 퇴직, 해고,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
3. 이 제도를 폐지한 때
4.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(가입) 하고자 이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를 신청한 때

제7조(부담금의 부담) 사용자는 제4조(퇴직급여제도)에 해당하는 법령을 준수하여 부담금을 부담한다.

제8조(부담금의 납입) 사용자는 제4조(퇴직급여제도)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급사유) ① 퇴직금은 본 대학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.

②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퇴직급여의 지급) ① 퇴직급여는 지급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에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퇴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효종단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.

제11조(퇴직급여의 수령권자) 퇴직급여의 수령권은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「민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재산상속권자가 갖는다.

제12조(퇴직급여의 제한) ① 재직 중에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본 대학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·부상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에게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